

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
상해보험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전승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3. 24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

상해보험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96호로 2025년 3월 10일 전승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군복무 중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”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가입대상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병역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03.11.~2025.03.1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복무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2조(정의)**는 본 조례안의 핵심인 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”에 대하여 규정함
- **안 제4조(상해보험료 지원)**는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
- **안 제5조(가입대상)**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)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²⁾ 포함) 또는 소집된 ³⁾상근예비역으로 규정.

○ 검토결과

- 국방부에서 발간한 ‘2024 국방통계연보’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군 복무 중 부상 등으로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인원은 8,095명임.
- 또한,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~2022년 군 복무 중 자살, 익사, 차량사고 등으로 사망한 군인은 421명이며, 2023년 기준 군병원 외래 및 입원 건수는 각각 1,376,854건, 19,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.

1) 「병역법」 제5조(병역의 종류)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현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

나. 이 법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(將校)·준사관(準士官)·부사관(副士官) 및 군간부후보생

2) 「군인사법」 제30조(전사자·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)에 따라 부사관으로 진급된 사람 등

3)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(入營)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(地域防衛)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

(단위 : 건)

군 사망사고 현황(통계청)					
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총계	86	87	55	103	90

(단위 : 건)

군 병원 외래/입원환자 현황(지표누리 e-나라지표)					
	2019	2020	2021	2022	2023
외래환자수	1,527,104	1,357,129	1,331,166	1,362,200	1,376,854
입원환자수	35,942	23,914	18,690	17,186	19,330

- 한편, 국방부에서는 「군인 재해보상법」을 근거로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, 현역병은 장애·사망보상금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,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금융기관 부담으로 자동가입되는 ‘병(兵)상해보험’ 또한 상해사망·후유장해인 경우에만 지원하여 보장범위가 좁으며, 영등포구에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‘구민생활안전보험’은 보장범위가 넓으나⁴⁾ 보장금액이 적다는 한계가 있음.

보 험	대 상	보장내용		
병상해보험 (나라사랑카드)	현역병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사망/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억원 - 상해사망/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- 화재, 폭발,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/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		
구민생활 안전보험 (영등포구)	모든 구민	구 분	보장내용	보장금액
		상해의료비 (장례비)	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, 발생한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(교통상해 제외) ※ 실손보험가입자 제외	인당 50만원 한도 (장례비: 500만원 한도) ※ 청구당 공제금: 3만원
		상해진단 위로금	영등포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 을 받은 경우(교통상해 제외) ※ 실손보험 가입 무관	인당 10만원 한도 (사고당 1회, 추가 진단 제외)
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	영등포구민(만 12세 이하)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~14급을 받은 경우	인당 50만원 한도 (부상등급별 지급 기준 적용)		

4) 낙상·미끄러짐, 끼임, 절단, 깔림, 화재, 감전, 개인형 이동장치사고 등
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재 국가 및 영등포구에서 지원 중인 보상을 보완하고 군복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2호(주민의 복지증진)5)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6)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 실제 서울시 7)7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총 32개 자치 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.
- 또한, 가입대상으로 현역병(兵⁸)에 “지원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용된 부사관(副士官)”을 포함한 사유를 살펴보면, 9)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43조(전사자·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)에

5) 지방자치법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6) 지방자치법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7) 강북, 광진, 금천, 동작, 마포, 서대문, 은평

8) 「군인사법」 제3조(계급)
 ③ 부사관은 원사(元士), 상사, 중사 및 하사로 한다.
 ④ 병은 병장, 상등병,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.

9)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43조(전사자·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)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.

5.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: 하사

따라 현역병인 병장이 전사·순직 등으로 인해 하사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)로 진급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위함이며, 해당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- 한편,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살이 군인사망의 주요원인 (5년간 사망원인 1위로, 약 76%에 해당)이 되는 만큼 집행기관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을 계약할 때 정신질환 관련 보장도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군복무 특성을 고려한 보험 설계를 통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할 것임.
- 참고로,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상해보험은 「구민 생활안전보험」, 사보험 등 타 보험과 중복하여 지원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, 다음의 표는 서울시 타 자치구 보장내역임.

타 서울시 자치구 보장내용(마포구)

보장항목

상해/질병 사망 상해/질병후유장해 5천만원 <small>상해후유장애 3~100% / 질병후유장애 80%</small>	상해 / 질병입원 [일당] 3만원 <small>180일 한도</small>	골절 / 화상 진단금 [회당] 20만원 <small>1군첩#의미없음 제외</small>	뇌출혈 /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<small>1회한</small>
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	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	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천만원	수술비 /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 <small>1회한</small>
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억원	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사망/후유장해 2천만원	상해사고 28일이상 진단 50만원 <small>1회한</small>	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 100만원 <small>1회한</small>

참고 자료

1 병역법

제5조(병역의 종류)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현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

나. 이 법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(將校)·준사관(準士官)·부사관(副士官) 및 군간부후보생

2 군인사법

제3조(계급)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장성(將星): 원수(元帥), 대장, 중장, 소장 및 준장

2. 영관(領官): 대령, 중령 및 소령

3. 위관(尉官): 대위, 중위 및 소위

② 준사관은 준위(准尉)로 한다.

③ 부사관은 원사(元士), 상사, 중사 및 하사로 한다.

④ 병은 병장, 상등병,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.

제30조(전사자·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)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. 다만,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 전투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. 다만,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(退役)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.

3

군인사법 시행령

제43조(전사자·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)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예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.

1. 장교: 1계급
2. 장교후보생: 소위
3. 원사: 준위
4. 상사·중사 및 하사: 1계급
5.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: 하사
6. 상등병·1등병 및 2등병: 1계급

② 제1항에 규정된 “전투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
2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

4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